

# 심 사 보 고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경 과

가. 발 의 자 : 최광옥 의원 외 6인

(최광옥, 강태원, 최미애, 권광택, 이영복, 김법기, 이규완)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2010년 4월 7일 / 2010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2010년 04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옥 의원)

가. 제안이유

-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간 위원수·직무·소관부서를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직무·소관부서 재 조정(안 제2·3조)
- 교육·학예업무를 전담 심사·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신설(안 제3조)
- 교육의원이 의장된 경우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4조)
- 교육위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단서 신설(안 제5조)

### 3. 검토보고요지

#### (의회운영전문위원 변영규)

- 최광옥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정수 확보와
  - 이와 관련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등 제규정의 정비
  -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자료에 대한 승계
  - 회의실, 사무실, 사무기기 등의 확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제 안 · 심 사 : 원안 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9. 첨 부 서 류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 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2. 정책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소방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복지위원회
  - 가.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행정문화위원회

- 가.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 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소방위원회

- 가.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교육·학예)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하나의”를 “한개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위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각각 변경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교육위원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임기종료까지 재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 중 “임명”을 “선출”로 각각 변경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62조에 따라...</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운영위원회 8명</li> <li>2. 행정소방위원회 7명</li> <li>3. 교육사회위원회 8명</li> <li>4. 산업경제위원회 7명</li> <li>5. 건설문화위원회 8명</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li> <li>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ul> </li> <li>2. 행정소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ol>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충청북도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운영위원회 10명</li> <li>2. 정책복지위원회 7명 이내</li> <li>3.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li> <li>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li> <li>5. 건설소방위원회 7명 이내</li> <li><b>6. 교육위원회 7명</b></li> </ol>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li>2. 정책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u>보건복지여성국, 충청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li> <li>나.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마.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바. <u>지방의료원</u>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ol>

현행	개정안
<p>3. <u>교육사회위원회</u>  가. <u>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u>지방의료원</u> 운영에 관한 사항</p> <p>4. <u>산업경제위원회</u>  가. <u>경제통상국, 농정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농업기술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u>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u> 운영에 관한 사항  라. <u>충북테크노파크</u> 운영에 관한 사항  마. <u>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u> 운영에 관한 사항  바. <u>충북신용보증재단</u> 운영에 관한 사항</p> <p>5. <u>건설문화위원회</u>  가. <u>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문화관광환경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오송바이오진흥재단</u> 운영에 관한 사항  다. <u>충청북도교통연수원</u> 운영에 관한 사항  라. <u>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u> 운영에 관한 사항</p>	<p>3. <u>행정문화위원회</u>  가. <u>공보관실, 행정국, 문화관광환경국, 자치연수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u> 운영에 관한 사항</p> <p>4. <u>산업경제위원회</u>  가. <u>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u> 운영에 관한 사항  다. <u>충북테크노파크</u> 운영에 관한 사항  라. <u>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u> 운영에 관한 사항  마. <u>충북신용보증재단</u> 운영에 관한 사항</p> <p>5. <u>건설소방위원회</u>  가. <u>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방본부</u>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u>오송바이오진흥재단</u> 운영에 관한 사항  다. <u>충청북도교통연수원</u> 운영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의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p> <p>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단서 신설 &gt;</p>	<p>6. <u>교육위원회</u>  가. <u>교육청(교육, 학예)</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한개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p> <p>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의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임명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임명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② 보임과 개선(改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임명과 개선(改選)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임명한다.</p> <p>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11조(부위원장)</p> <p>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p> <p>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교육위원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임기종료까지 재임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③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9조(위원의 선출과 개선(改選)①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출한다.</p> <p>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제11조(부위원장)</p> <p>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p> <p>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위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교육의원이 꺾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2.26]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도의회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 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起債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제17조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 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53조(선거구 및 그 정수) ① 교육의원은 교육위원의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선출한다.

② 교육위원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구단위로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위원의 선거구 명칭 및 구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0.2.26]

### **부칙 <제8069호,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